
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9. 20.

발의자 : 김종희 · 장병완 · 정동영

박지원 · 김경진 · 윤영일

이찬열 · 황주홍 · 정춘숙

김수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·허가,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제약산업육성·지원위원회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·허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, 해당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제약산업육성·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「형법」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

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
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
임(안 제6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제약산업 육성·지원위원회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제약산업 육성·지원위원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</u> <u>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</u> <u>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</u> <u>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</u> <u>으로 본다.</u>